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 9.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1999. 3월 행정동 통합이후 관할구역과 인구증가 등으로 현 동청사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모사곡동주민센터 이전신축 및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
-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여, 숭고한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후손에게 계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 지
 - 위 치 : 17,798m² (사곡동 579-3번지 외 8필지)
 - 기준가격 : 2,100백만원
- 건 물 (신 축)
 - 면 적 : 2,570m²
 - 기준가격 : 6,860백만원
- 기 타(조형물) : 기념탑 1식
 - 기준가격 : 400백만원

□ 상모사곡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사곡동 579-3번지외 7필지
- 면 적 : 4,310m² 정도
- 기준가격 : 1,700백만원(가 감정가 기준)

○ 건 물 (신 축)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2,570m²)
- 기준가격 : 6,860백만원

※ 2008. 4월 관리계획 승인후 2010년 12월 부지매입 완료 하였으나
2011. 3월 동사무소 예정부지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부지로 결정되어
새로운 부지 매입이 필요함.

□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진평동 산 8-2번지 임야/ 13,488m²
- 기준가격 : 400백만원(가 감정가)

○ 기 타(조형물)

- 기념탑 (탑신, 조형물, 분향대) 1식
- 기준가격 : 400백만원(사업비)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9필지	17,798	2,100,000	9필지	17,798	2,100,000
		건물				1식	2,570	6,860,000	1식	2,570	6,860,000
		기타				1식		400,000	1식		400,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9필지	17,798	2,100,000	1필지	17,798	2,100,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1식 1식	2,570	6,860,000 400,000	1식 1식	2,570	6,860,000 400,000
		건물 기타									
처분	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12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 (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구분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9필지	17,798	2,100,000				
매입	임	구미시 사곡동 산32-4	115	28,000	2012년 하반기	상모사곡동 청사 이전 신축부지	김동균	가감정 평가액
	임	구미시 사곡동 579-10	260	65,000	"	"	여동식	"
	답	구미시 사곡동 579-2	786	212,000	"	"	정용길, 윤중식, 이동철	"
	전	구미시 사곡동 579-3	2,203	798,000	"	"	박영철, 박영규	"
	전	구미시 사곡동 579-4	200	276,000	"	"	박영철, 박영규	"
	전	구미시 사곡동 577-3	570	216,000	"	"	윤상기	"
	전	구미시 사곡동 577-5	80	91,000	"	"	한동학	"
	도로	구미시 사곡동 635	96	14,000	"	"	국(건설부)	"
	임	구미시 진평동 산8-2	13,488	400,000	2012년 하반기	3.12 독립만세 운동기념탑건립 부지	인동장씨 남산파종중	"
			이	하	여	백		

2012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illegible]

취 득 대 상 현 황

☐ 재산의 표시 : 상모사곡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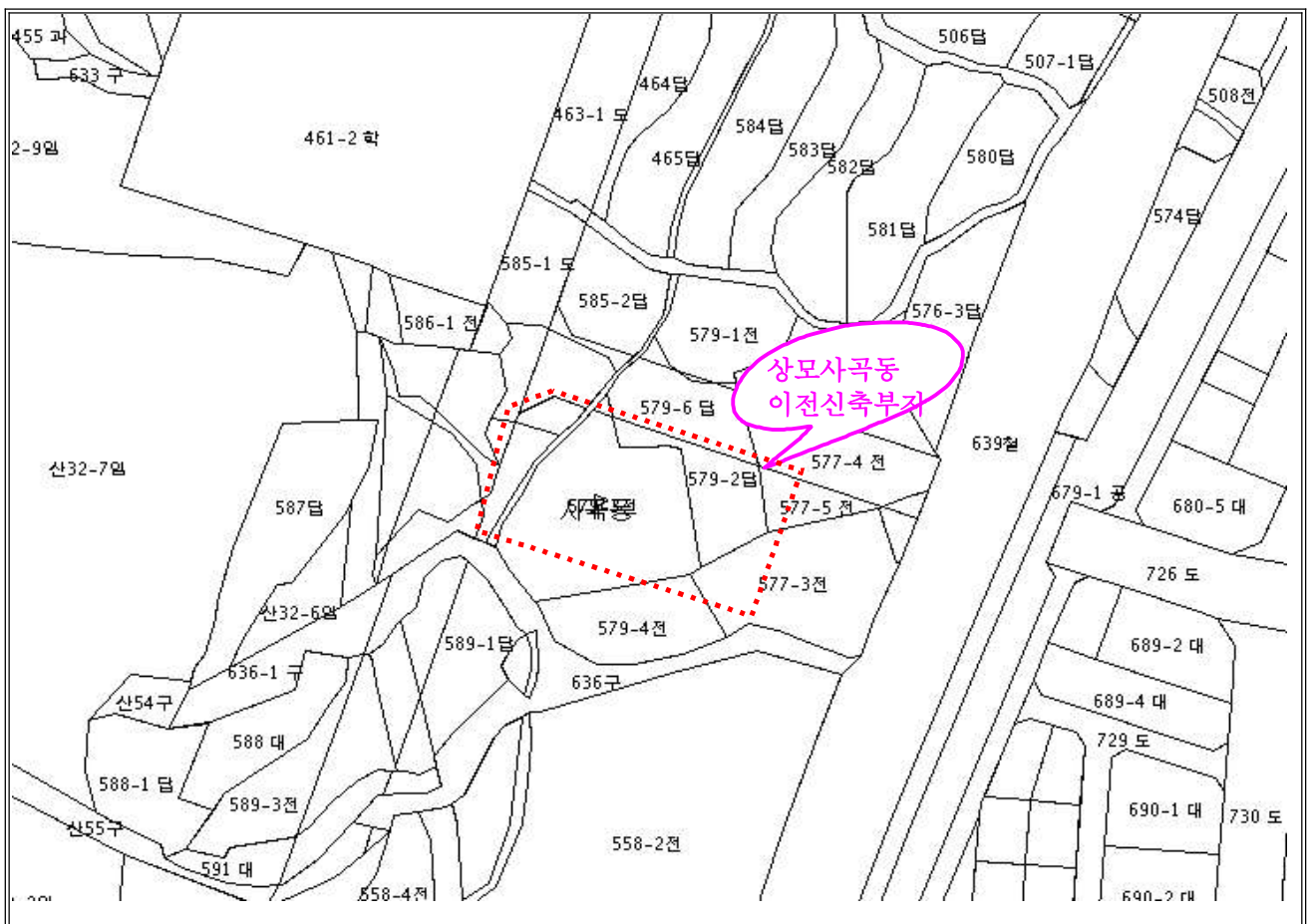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사곡동 579-3번지 외 7필지
- 면 적 : 4,31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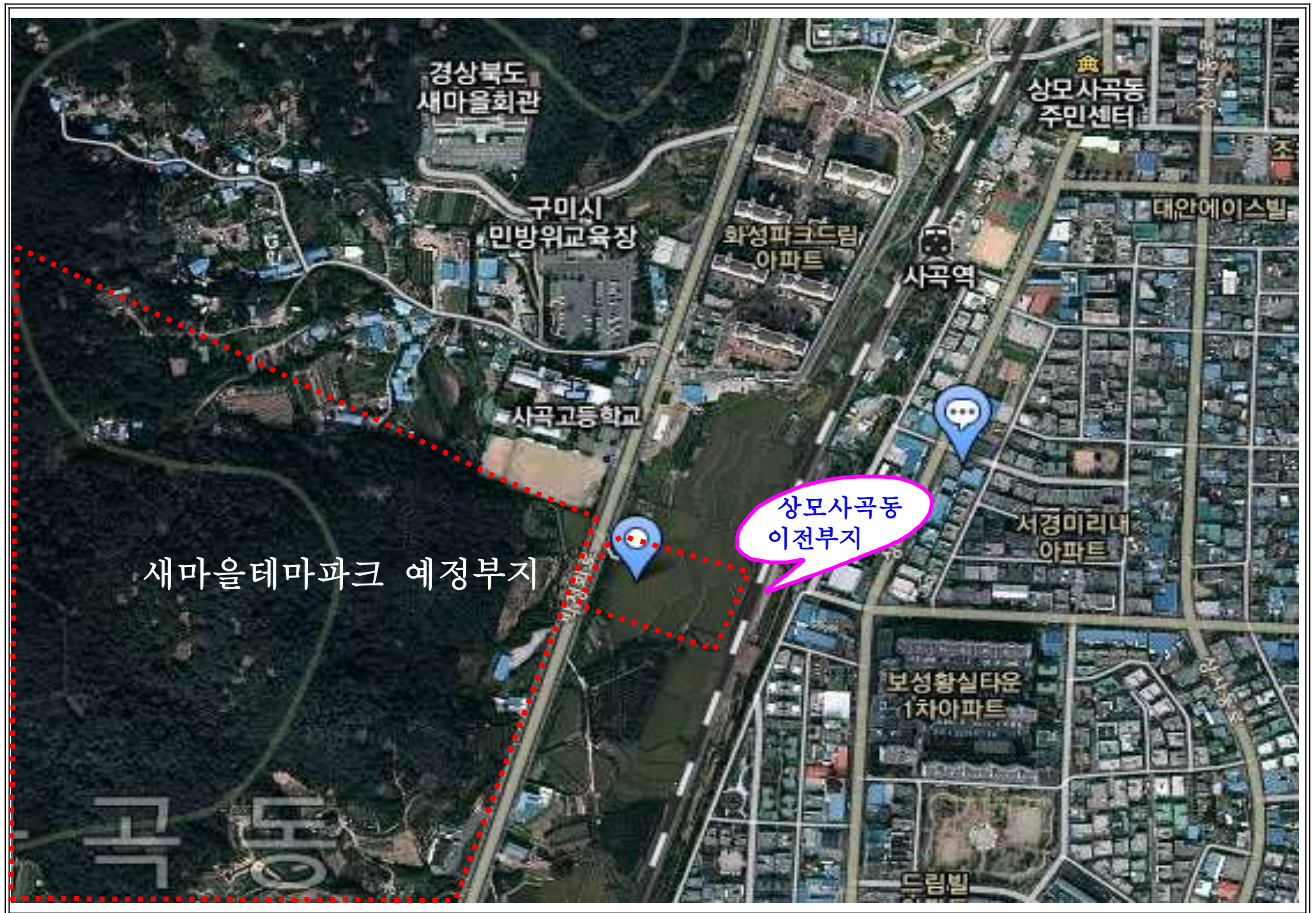
○ 건 물 (신 축)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 면적 : 2,570m²

□ 지 적 도



□ 위치도



□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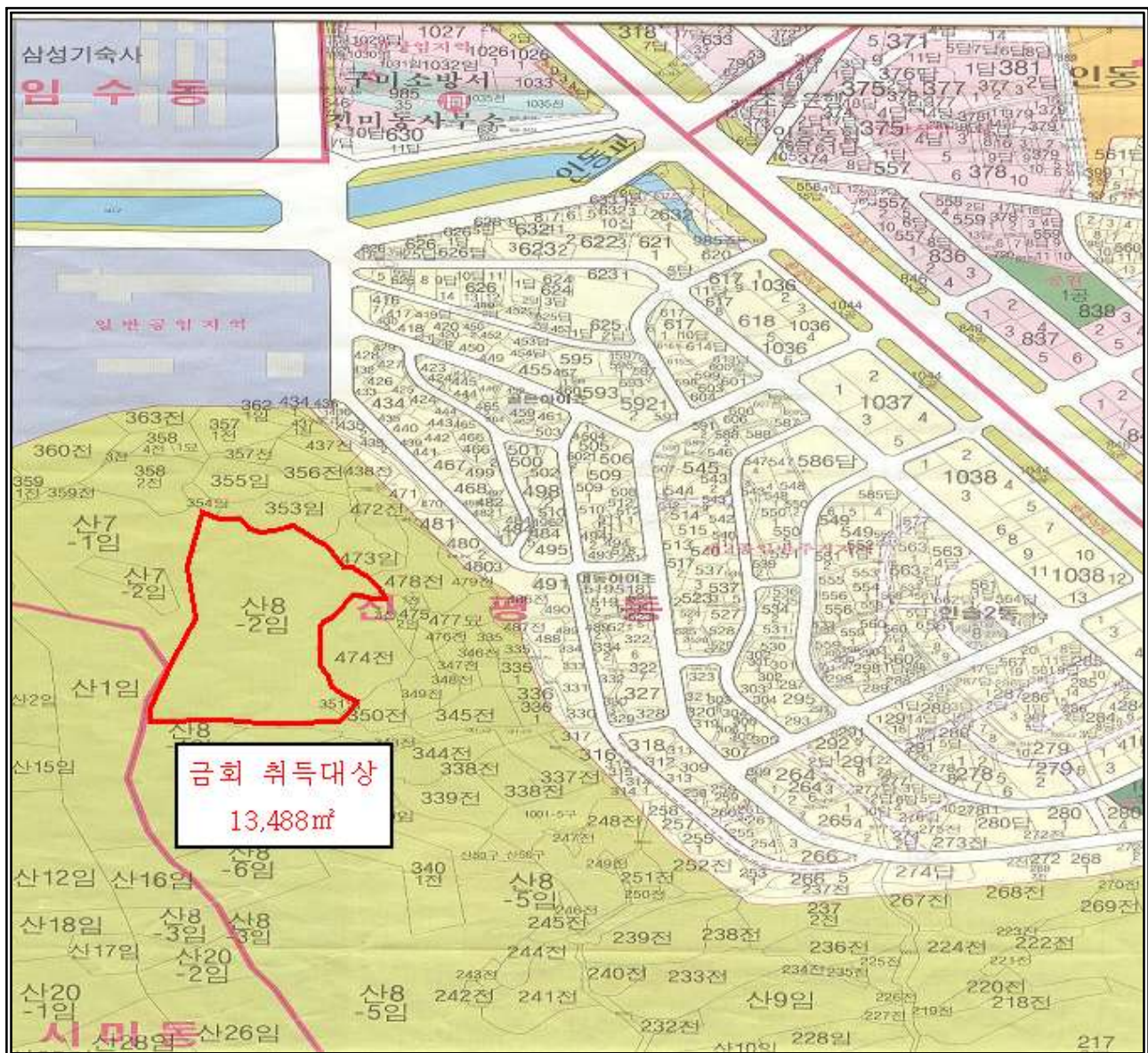
취득대상 현황

□ 재산의 표시 :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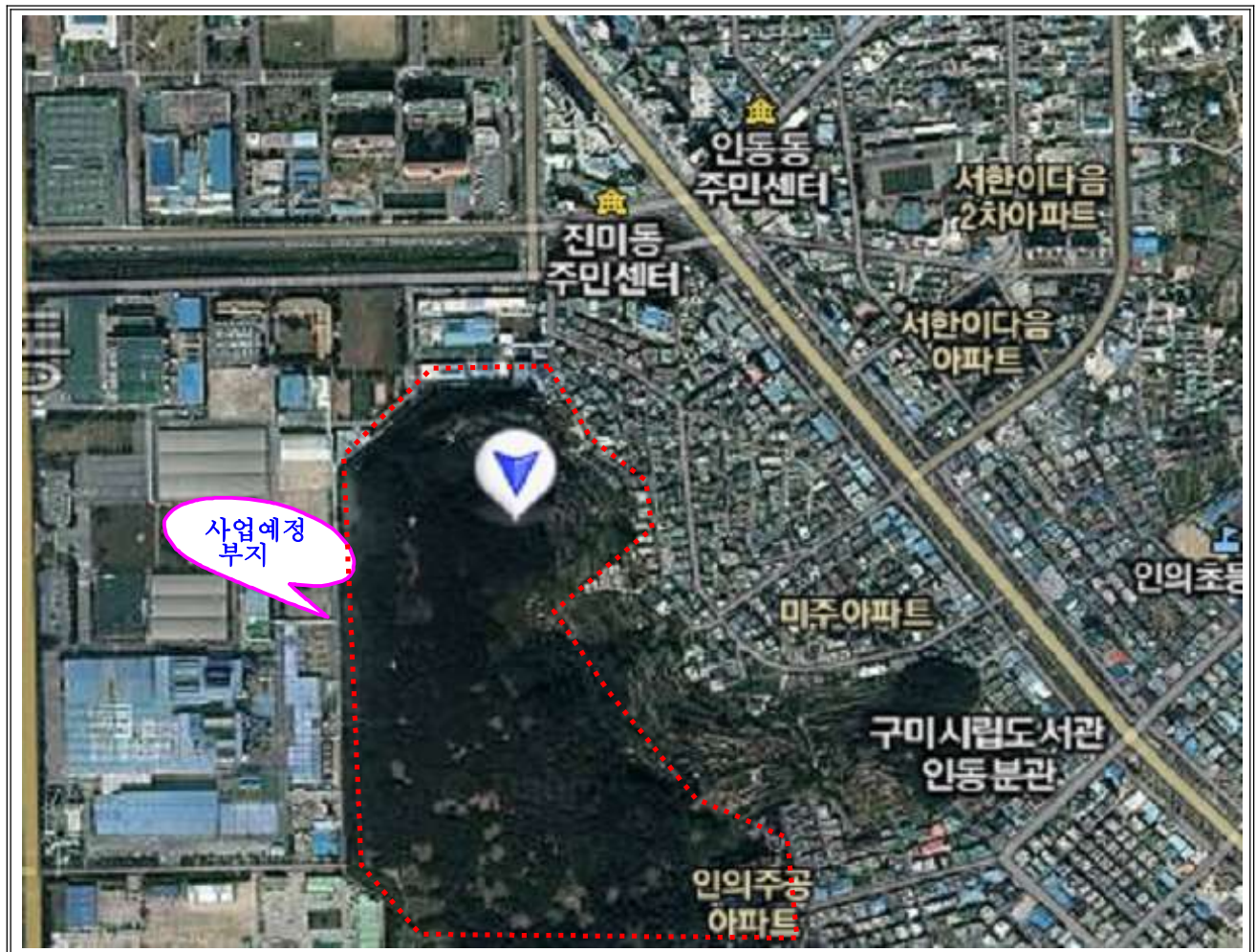
○ 토 지 : 구미시 진평동 산 8-2번지 임야/13,488㎡

○ 기 타 : 기념탑 1식

□ 지 적 도



□ 위치도



□ 사진대지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 5. <생략>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심의회 의 업무)

① 심의회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